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(의안번호 1248)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6. 5. 31.(화)

나. 제 출 자 : 하경숙 의원 외 9명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6. 6. 3.(금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6. 6. 20.(월)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 : 하경숙 의원)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제정·공 포('14.12.29)이후 인권보장 및 증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 하여 구청장의 책무사항과 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 조례 제정 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구민 행복 중심으로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구민의견 수렴 등 구청장의 책무 사항 개정(안 제4조)
-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, 평 가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6조)
-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9조)
- 인권관련 전문가, 공개모집, 성별균형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10조)
- 위원회 운영 및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12조 ~ 제13조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(검토보고자 : 전문위원 강기환)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「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제정·공 포 ('14.12.29)이후 인권보장 및 증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사항과 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 조례 제 정 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